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신설

나. 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 서식 내 세대주 확인란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다만,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대

상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신고 사항	신고내용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변경사항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세대주 확인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변경사항'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합니다).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확인' 칸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세대주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6.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신고 사항	신고내용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변경사항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세대주 확인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	-----------------------------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변경사항’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 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합니다).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확인’ 칸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세대주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생략)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다만,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대상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7